

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]

덤핑방지관세율(제4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 관세율(%)
중국	1. 코닥그래픽[Kodak (China) Graphic Communications Co., Ltd.]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10.32
	2. 보시카(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3. 화광그래픽(Lucky Huaguang Graphics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4. 화광바오리(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5. 종인(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6. 그 밖의 공급자	8.78

비고: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공급자와 제 6 호의 “그 밖의 공급자” 사이에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“그 밖의 공급자”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